하남시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 **2151**

제출연월일 : 2020. 11. .

제 출 자:하 남 시 장

1. 개정 이유

근로복지기준법 제28조를 하남시 조례에 반영하여 근로복지시설을 설치· 운영하는 노동조합 등에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도모코자 함.

2. 주요 내용

시장은 근로복지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사업주(사업주단체를 포함한다.)·노동 조합(지부·분회 등을 포함한다)·근로복지공단 또는 노사관계 비영리법인에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(안 제4조제2항 신설)

3. 개정조례안 : 덧붙임

4. 신구조문 대비표 : 덧붙임

5. 관계법령 발췌서 : 덧붙임

○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(근로복지시설 설치 등의 지원)

6. 예산수반 사항 : 해당없음

7. 입법예고 결과

가. 입법예고기간 : 2020. 10. 08. ~ 10. 28.

나. 의견내용 : 의견없음

8. 부서협의 결과

가. 성별영향 분석평가 : 의견없음

- 9. 참고사항 : 해당없음
- 10. 관련부서 : 경기도 노동정책과

하남시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하남시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제목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시장은 근로복지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사업주(사업주단체를 포함한다)·노동조합(지부·분회 등을 포함한다)·근로복지공단 또는 노사관계비영리법인에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서명		일자리경제과
입 안 자	부서장	일자리경제과장
	직위·성명	최길용
	팀장	사회적경제팀장
	직위·성명	이문표
	담당자	김청용
	성명·전화번호	(790-5144)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현 행 제4조(지원 대상 사업) 시장은 제3조제 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관 및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 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. 1.~4. (생 략) <신 설>	개 정 안 제4조(지원 대상 사업) ①
	을 포함한다)·근로복지공단 또는 노사관계 비영리법인에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근로복지기본법

[시행 2020. 5. 26.] [법률 제17326호, 2020. 5. 26., 타법개정]

고용노동부(퇴직연금복지과), 044-202-7559

제22조(신용보증 지원 및 대상) ①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에 따른 근로복지공단(이하 "공단"이라 한다) 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근로자(구직신청한 실업자 및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에 따른 재해근로자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장에서 같다)가 금융회사 등에서 생활안정자금 및 학자금 등의 융자를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에 대하여 해당 금융회사 등과의 계약에 따라 그 금전채무를 보증할 수 있다. 이경우 보증대상 융자사업 및 보증대상 근로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공단과 금융회사 등과의 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- 1. 제1항에 따른 채무를 보증한다는 내용
- 2. 신용보증 대상 융자사업 및 근로자
- 3. 근로자 1명당 신용보증 지원 한도
- 4. 보증채무의 이행청구 사유・시기 및 방법
- 5. 대위변제(代位辨濟) 심사·범위 및 결손금에 대한 금융회사 등과의 분담비율
- 6. 금융회사 등이 공단에 신용보증 지원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통지하여야 할 사항
- 7. 그 밖에 근로자 신용보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③ 공단이 제1항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
- 제28조(근로복지시설 설치 등의 지원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(이하 "근로 복지시설"이라 한다)의 설치·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 -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근로복지시설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사업주에게 이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.
 -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(사업주단체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·노동조합(지부· 분회 등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·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이 근로복지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18. 4. 17.>
 -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복지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·사업주·노동조합·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에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18. 4. 17.>